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5의4] <개정 2013.3.23>

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(제27조의2제7호 관련)

1.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훅 모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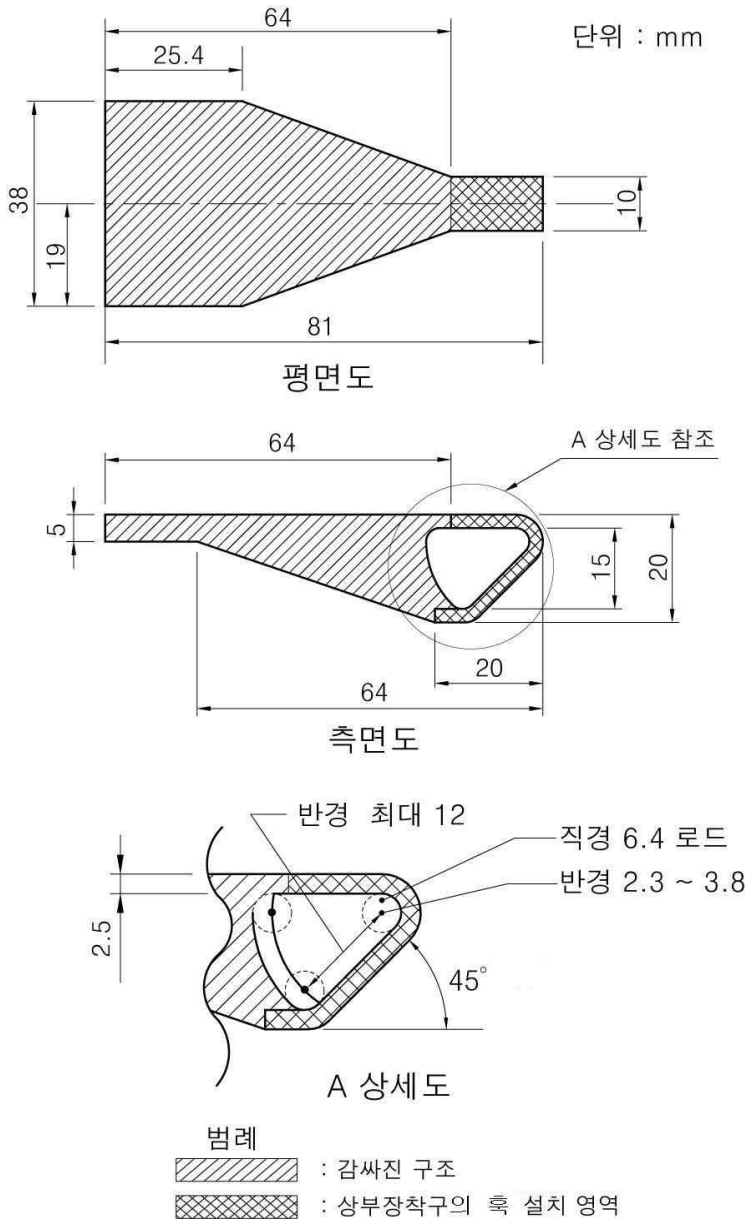

2.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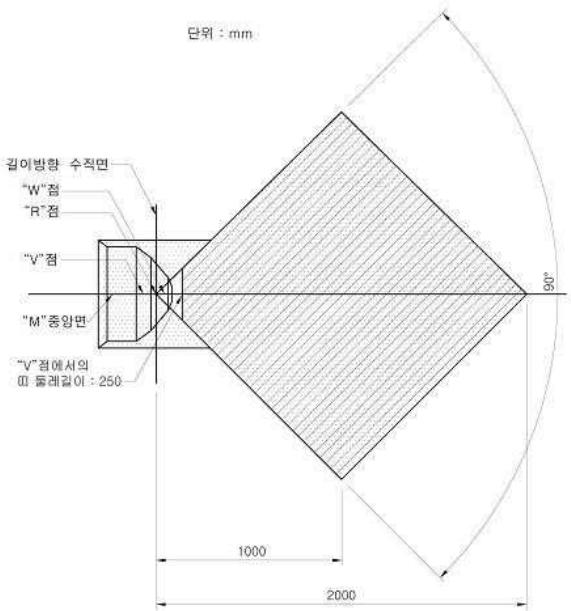

평면의 설치범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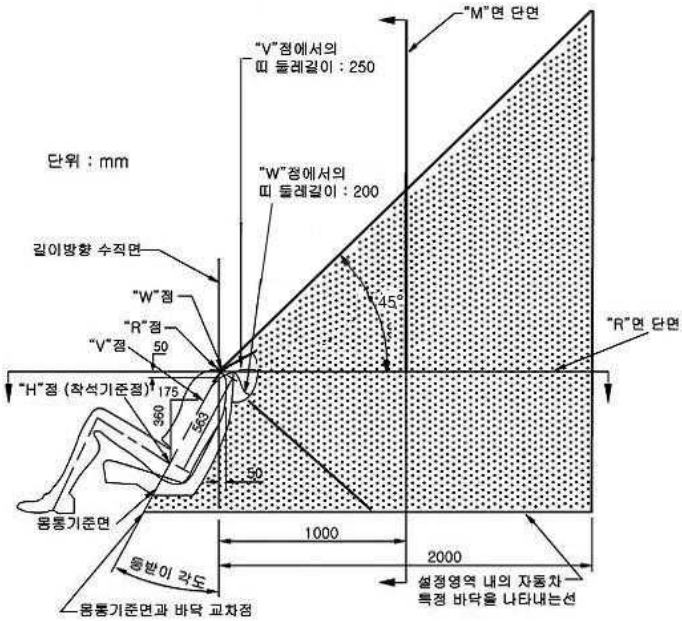

측면의 설치범위도

주) 1. "R"점 : 어깨기준점

2. "H"점 : 착석기준점

3. "V"점 : "H"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

4. "W"점 : "R"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수평 뒤 50mm

5. "M"면 : "R"점으로부터 수평 뒤 1,000mm

3.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 설치기준

가.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나.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세부제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다.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직경 6밀리미터의 수평막대로 아래의 그림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
하부부착구의 설치